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1. 1. 27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월 20일

(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경용)

가. 제안이유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

에 필요한 사항 규정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조)
- 충청북도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하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·조정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‘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’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관련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제5조 ‘협의회의 운영’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례회의가 없이 수시 회의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

- 제6조 ‘하부협의회 지원’에 관한 근거를 ‘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위가 있는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의 해촉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2.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
3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

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하부협의체의 구성·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하부협의체 지원) 도지사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,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

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, 관련 기관·단체,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, 세미나 등의 개최,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성실 이행의무) ① 위원장은 협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.

② 충청북도,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·근로자단체·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『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 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 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, 협의회의 위원

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 (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협의체 지원 운영
2. 비용추계의 전제 :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	2015년도	합계
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도 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
4. 부대의견 : 해당사항 없음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충청북도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장 이승철
연 락 처	043) 220 - 3391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2011년도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협의체 지원 : 100,000천원
 -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협의체 운영 (회의 등) : 30,000천원
 - 지역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사업 : 17,000천원
 - 노사파트너십구축 및 노사평화선언 후속사업 : 43,000천원
 - 노사민정 협력 홍보사업 : 10,000천원

- ※ 근거 :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
 - 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 - (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·구성 및 기능)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재원조달방안

1. 부문별 재원분담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2011년도	2012년도	2013년도	2014년도	2015년도	합계
지방자치단체 · 일반회계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합 계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
2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- 도 일반회계 예산

3. 부대의견 : 없음

4. 협의사항 : 없음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충청북도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장 이승철
연 락 처	043) 220-3391